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2.15 (수) 16:00

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**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과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 등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